

안전번호	제25-12호 (제458차 이사회)
보고년월일	2025. 9. 26.

보  
고  
사  
항

전차 이사회 개최결과 보고

제 출 자	주 택 도 시 보 증 공 사 기획조정실장 김 용 한
제출년월일	2025. 9. 26.

## 1. 제457차 이사회 개최결과

가. 회의일시 : 2025. 8. 22.(금) 11:00

나. 회의장소 : 여의도 태흥빌딩 7층 1회의실

다. 참여현황 : 이사 10명 중 9명 참석

라. 회의결과 : 보고사항 1건 원안접수, 의결사항 2건 원안의결

구분	안건번호	안건명	회의결과
보고 사항	제25-11호	전차 이사회 개최결과 보고	원안접수
의결 사항	제25-31호	자본금 증자안	원안의결
	제25-32호	2025년 채권 발행계획안	원안의결

마. 주요 경영제언 및 조치현황

제언사항	조치현황
<p>○ 채권회수 강화를 위한 실적 점검 및 채권회수 촉진 방안 필요</p> <p>[심오택 이사]</p>	<p>○ 채권회수 전략회의 및 간담회를 통한 실적 정기 점검, 경매법원 협력 및 추심위임 활성화 등 회수 촉진 방안 지속 발굴·추진 예정</p>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및 규정 : 별첨

나. 조치사항 : 이사회 회의록 및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공시  
(공사 홈페이지 및 통합공시시스템)

【별첨】

관련 법령 및 규정

□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

제61조(이사회 회의록 작성) ①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, 장소, 참석자 명단,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내용,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의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

□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

제34조(이사회 회의록 공개) 공공기관 이사회 회의록은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체 홈페이지와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공개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록의 일부 등으로 최소화하고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□ 이사회규정

제8조 (의결 및 보고사항) ① ~ ③ (생략)

④ 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국정감사,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회계 감사와 동법률 제52조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
2.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(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만한다)
3.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의 업무수행실적
4.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이나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